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	기 판 의 장
람	



제 1160 호 2019. 2. 7. (목)

고 시

○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-24호[소하천 준공인가 고시] 2

안 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→구정소식→알림마당→북구공보
--------	--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- 24호

소하천 준공인가 고시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10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소하천공사 준공인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2월 7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소하천정비 개요

가. 소하천등 정비의 명칭 및 시행 위치 : 장등천 (신현동 958-16번지 일원)

나. 착공 및 준공 연월일

착공 : 2018. 11. 15.

준공 : 2019. 1. 30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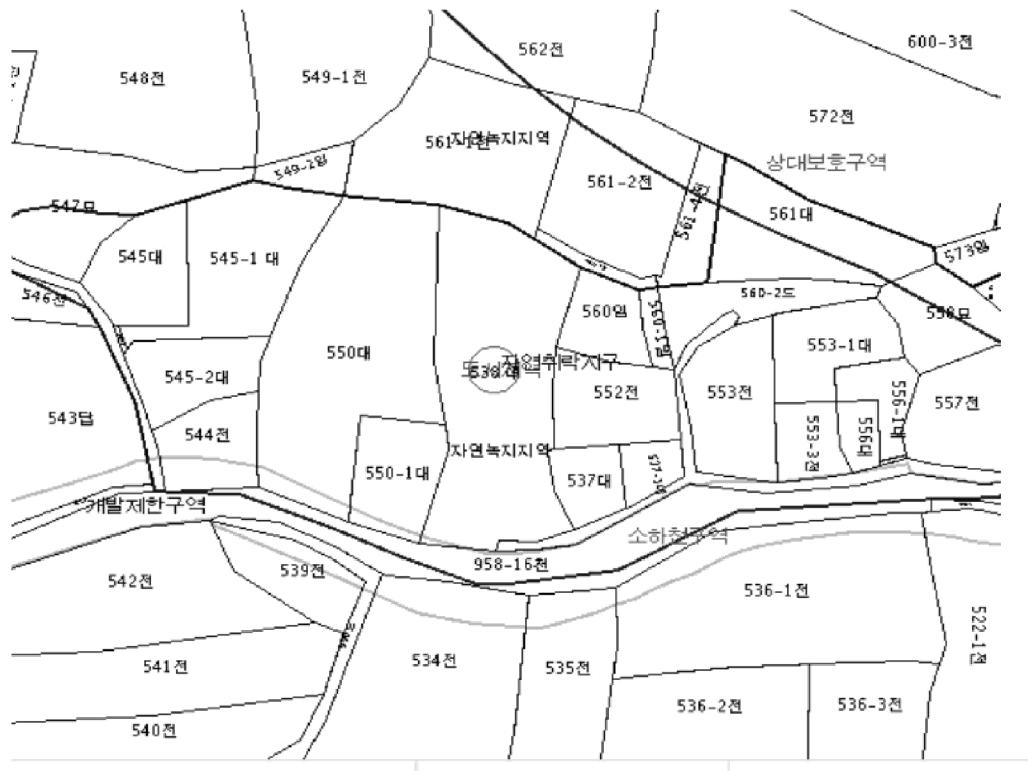
2. 소하천등 정비 시행자의 명칭

김 부 명

3. 소하천등 정비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

소재지	지번	지목	대장면적(m ²)	점용면적(m ²)	비고
신현동	958-16	천	25,454	0.525	
계					

4. 해당 소하천구역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



8

축적변경

인쇄

- 도시지역
 - 자연녹지지역
 - 소하천구역
 - 상대보호구역
 - 개발제한구역
 - 자연취락지구
 - 법정동

축척 1 / 1200 ✓



5. 그 밖에 준공된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

- 가. 집중호우 예상 시, 현장 위험요소 제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예방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및 피해보상 하여야 합니다.
 - 나. 하천개수를 위한 하천공사 및 도로확장공사 등 국가계획 및 공익상 필요하거나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 시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, 해당 공작물의 이설 또는 철거가 요구될 경우 피허가자 부담으로 이설 또는 철거해야 하고 이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
 - 다. 본 허가에 따른 구조물은 허가목적(주택을 위한 진입로)으로만 사용가능 하며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합니다. 이를 위반할 시 「소하천정비법」 제17조 규정에 의거 점용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, 해당 인공구조물의 이전·제거 또는 그 밖의 필요 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.
 - 라. 그 외 사항은 『소하천정비법』에 의합니다.